

#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법 위반 및 그 대응 방안

\* 발표자: 이장희/한국외대 법전문 명예교수(국제법)

\*일시/장소:2023.10.04(수),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최/주관: 전국교수연대회의/국회의원

# 목차

## I. 문제 제기

### ▶ II.-1,2,3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폐염수 해양방류 사건개요

### ▶ III. 국제법 위반 쟁점 검토 :

1. 유엔 국제해양법(1982) 위반 ;2. 런던 협정 위반 (975),
3. 동 런던 의정서 위반(1996) 4. 원자력안전협정(1998) 위반;5.생물다양성협약(1992)
6. 사전주의의무 위반; 7. 사전방지의무 위반.

### ▶ IV-1,2. UN 국제해양법 개별 위반 검토

### ▶ V. UN 국제해양법 위반성 총체적 검토

#### VI-1. 일본 정부의 국제책임 논증

### ▶ VI-2,3 .일본 정부의 국제책임 성립

### VII. 일본정부의 국제법 위반, 국제재판소 제소방안 검토

### XIII. 후염수 해양투기,유엔해양법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제소(강제절차)의 사전 검토사항

### IX. 국제중재판례: 해양환경보호 규정위반사실을 주장, 국제 중재사건 개관: 6건

### X. 종합결론

솔로몬 군도 소가바레 총리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세계신뢰, 연대에  
대한 공격", UN총회연설 (2023.9.22.)



# II-1.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사건개요

- ▶ 1. 2011.3.11:일본 동북지방 태평양해역 해저 깊이 24km,규모 9.0 동 일본 대지진 발생.7등급(가장 심각한 사고등급),19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와 동일도쿄전력 등급.
- ▶ -곧 이어 1시간내에 거대한 쓰나미,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침수,1.3.4호기 수소폭발과
- ▶ 방사능 누출.
- ▶ -대지진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재앙 실태:
- ▶ 피해장소:이야기 현.후쿠시마 현,이의태 현 등 중심1만5,890명 사망,2,589명 실종,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병사등 지진관련 사망자 집계 3,407명(2015.9.기준),직간접 사망을 합치면 2만명 상회. 해일로 침수된 면적 561평방km, 해일피해 농지면적 2만1480ha,어선피해 2만8600척, 일본내각발표 피해규모는 약16조9천억엔9 (182조원).
- ▶ 2. 2020.1 월 까지 방류않는다고 약속(전국어연과 문서로 동의없이 배출하지않는다고 약정),갑자기 2021.4.13. 해양 방류결정. 후쿠시마 현재 지자체 70%가 반대 또는 우려.
- ▶ 3 .2021.4.13.: 일본정부, 후쿠시마 사고 원전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2023년 부터 30년간 해양 투기 기본방침 발표. 이 결정 이유는 2022.10 경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 양,저장탱크 용량한계 도달.

# II-2.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사건개요

- ▶ 4.5가지 처리방법(지층주입,수중기방출,수소방출,지하매설,해양방출)중 해양방출 비용이 최고 저렴.
- ▶ 5. 2022.7.22.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제1원전발생 오염수 해양방류계획 정식인가.2023년 4월 130만+ 방류결정.
- ▶ 6. 2023,1.13.: 일본 각료회의,23년 봄 이나 여름부터 30년간 오염수 방류 발표.
- ▶ 7. 2023.8.24.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 조건,  
▶ 동일 오후 1시 해양 방류 실제 시작.

## II-3. 후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사건개요

8. 위험성: 현재기술수준, 64종 방사성물질 제거, 저감하는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ALPS)로 오염수 처리후 바닷물희석,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 낮추어 방류, 그러나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되지않고 잔류.

-삼중수소 일부가 체내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 유기화합물과 결합, 더 오래 머물며, 이것이 장기간 축적, 유전자변형,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음.

9.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심각한 우려. 일본 도쿄전력과 정부는 오염물질과 그 영향에 대해서 적어도 주변국에 정보공개 논의 테이블도 그동안 마련하고 있지 않았음.

10. IAEA 최종보고서, IAEA 안전 검토범위에는 일본정부가 따르는

정당화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 불포함 . 또 IAEA는 자신의 최종

보고서가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결정을 추천(recommendation)하거나 보장(endorsement)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추후 그 책임을 회피함.

11.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 후, 36년 흘러도 200t 핵폐기물 남음. 발전소 반경 36km 출입통제. 주민 고향 떠남.

12. 18개국 참가하는 태평양제도포럼(PIF), 남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의 전문과학자패널 오염수평가: "일본 오염수 방류결정, 시기상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부족. 11가지 부정적 핵심내용제시..

13. 솔로몬군도 총리: "IAEA 평가보고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않았고. 공유된 과학적 자료로 불충분하고

▶ 불완전하며 편향된 상태인데도 이러한 우려는 무시.."(2023.9.22.un 총회연설)

# III. 국제법적 쟁점 검토

2011년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오염수 방류와 2021년 4월 13일 원전 방류 방침 결정 2년후(2023,4.24.)부터 30년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인가?

1,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위반 여부 검토.

- 유엔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3조의 해양환경보호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한 체약국(일본 정부)의 일반적 의무를 위반.
- 구체적 의무 위반으로서 유엔 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오염방지,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의무)를 ,제196조(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및 보고서 송부의무)를 위반. 신 유엔해양법은 해양오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 및 처벌 그리고 국제해양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강제관할권 부여 조항을 둔 것이 특색.

## 2. 런던협약 위반(1975):

-런던협약(폐기물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rs and Other Matter, 1975년)는 국내수역 밖의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

-1993.11.개정(제16차 당사국 회의): 방사능 물질의 해양투기 전면금지(72년 고준위방사능만 완전투기금지), 동 결의채택이후 25년이내 그리고 이후부터 매 25년마다 동 금지주항에 대해 재검토 실시키로 규정

# 3. 96년 런던 의정서

- ▶ 1996.11.7. 런던의정서는 93년 런던협약당사국회의에서 채택,2006.3.2.발효된"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해양오염 1996년 의정서."(\*일본의 요구로 런던협약보다 강화된 96년 런던의정서 채택)
- ▶ -1993년 11월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일체의 방사능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자는 결의 채택, 1996년 11월
- ▶ 런던 의정서에 반영.
- ▶ -체약당사국은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상소각을 금지하며,동물질의투기나 해상소각을 위하여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것을 허용하지않음.
  - 적용범위 쟁점: "육상 " 에서 배출되는 오염이 아니라 해상(at sea)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적용.
- ▶ -런던의정서의 금지대상 '투기(dumping)에는 기타 해상인공구조물로 부터 고의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일체의 행위(1(4))
- ▶ -일본은 연안해저 1KM 지하 해저터널을 만들어 바다에 배출함. 이는 통상의 육상에서의 배출과는 다른 방식임. 런던의정서가 금지하는 '기타 해상 인공구조물 ' 에 해당한다고 봄.
- ▶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수는 육상원인 오염이기에,선박.항공기(해상) 오염투기를 다루는 런던 의정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 ▶ -그러나 96년 런던의정서 전문과 전체에 흐르는 기본원칙(사전주의원칙,사전방지원칙,오염자부담원칙,해양오염의전가금지)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그대로 적용 가능.

## 4, 원자력 안전협약(1996) 위반

,-원자력안전 협약(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996년 발효).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약이다. 동 협약 제11조는 각국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방사선 및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 의무.

## 5. 생물다양성협약(CBD)

- ▶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일본은 관할지역지역에서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관할지역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 -또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관련정보를 해당국에 통지하고 협의해야한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음.

## 6, 사전주의의무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손해를 야기할 **가능성만** 있고,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엄격성.

-이 원칙에는 통지(notify) 및 협의(consult), 감독의무(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적인 원칙.

-1992년 환경과 개발, 리오선언 15: 사전주의원칙을 진정한 원칙(principle).

-국제판례: 1949년 Corfu Channel case. ICJ는 "국가책임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circumstances) 상 국가책임의 주체적 책임을 인정."

미국과 EC, 그리고 캐나다-EC 간에 제기된 European Communities-Hormone 사건에서 EC는 사전주의원칙은 이미 [국제관습법규]로 되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의 일반원칙]. 국가들에게 절대적인 과학적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중대한 잠재적 환경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전주의는 아래 설명할 [사전방지원칙]보다일보 전진. 또 오염자에 유리한 전통적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전환도 고려.

## 7, 사전방지원칙(Principle of prevention action): 과학적으로 증명된 환경 손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 -국제 판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은 국가의 관할이 미치는 지역과 국제공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포함하여 초국경적인 환경피해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
- ▶ -국제관습법으로 Trail Smelter Arbitration case (US v.Canada)(1941)에서 판시. [사전방지원칙]은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 및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2.

# IV-1 UN 국제해양법 개별 위반 검토 :

제12부 “해양환경보호와 보전” 규정(제192조-237조).

- ▶ 1. 제192조 해양환경보호 일반적 의무.
  - ▶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 ▶ 2. 제193조 해양환경보호 및 보조의무
  - ▶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에 따라 자국의 자연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 3.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 ▶ -1항: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하는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 ▶ -2항: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않게 수행하도록 보장 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사고나 활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 -3항: "...특히 다음 사항 가능한 가장 극소 조치 취해야.."(a)  
육상오염으로부터 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있는 유독,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

## 4. 제206조: 활동의 잠재적 영향 평가 및 보고서 송부

- ▶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제205조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 IV.-2 UN 국제해양법협약 개별 검토

5. 제207조: “육지 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해 법령 기타 조치를 취한다.”

▶ 6. 제213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 - “각국은 육상오염원에 관련 자국 법령을 집행하고, 육상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 국제규칙, 기준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집행하고 조치를 취한다.”

▶ 7. 제235조 해양오염보호 의무에 따른 국제책임.

▶ -1항: “각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진다.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V.UN 국제해양법 규정 위반성 총검토

- ▶ 2011년 일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사고후 ,
- ▶ 1)일본정부는
- ▶ -사전협의를 의무, 사전통고의무, 원자력안전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전혀 지키지 않음.국제법상 상기 의무 명백한 위반 .
- ▶ 2)2021년 4월 13일 오염수 방류 최종방침결정이후에도 동일한 위반.
- ▶ -제192조 해양환경보호 일반적 의무 위반.
- ▶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의무
- ▶ 위반
- ▶ -제206조 활동의 잠재적 영향 평가 및 보고서 송부 의무 위반
- ▶ -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방지,경감,통제 의무 위반
- ▶ -제213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관련 법령집행 의무 위반
- ▶ -제235조 해양오염의무 위반에 대한 국제법상 국제책임

# VI-1. 일본정부의 국제 책임

- ▶ -일본원자력위원회라는 일본국가에 귀속되는 국가의 행위로서
- ▶ **주관적 요건 충족,**
- ▶ - 유엔해양법협약(1982)의 일반적 의무와 구체적 실천원칙(사전주의의무 및 사전방지의무)위반;런던협정(1975) 해양투기금지의무 위반;
- ▶ -원자력안전협정 (1996)의무 위반 ;생물다양성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무라는 “국제의무위반행위인 **객관적 요건을 갖춤.**
- ▶ -다만 일본의 위법행위와 위험한 해양환경오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입증책임이 관건.
- ▶ 입증책임은 오염자가 아니고 오염피해자.

## VI-2. 일본정부의 국제책임

▶ 2011원전폭발사고 그후 2021.4.13.사이에 인과관계를 정확한 과학적 입증은 실제 방류되지 않은 2021년 당시는 힘들었음.

그러나 2023.7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진 현 시점에는 정황적 입증은 충분히 가능함.

-정황적 증명(circumstances evidence)으로 일본정부의 국제위법행위, 국가책임을 성립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

▶ - 해양 인근국가 국민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상

## VI-3. 일본 정부의 국제책임 성립

- ▶ 일본 원자력위원회라는 일본 국가기관의 원전수 방류결정은 국제법주체의 불법행위이고, 상기행위는 일반국제법상의 의무와 실정 국제법상의 의무의반(유엔해양법협약/런던협약 및 동의정서, 원자력안전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국제환경관습법(일반예방의무, 사전주의의무위반) 위반 으로서 명백한 국제법위반행위. 일본의 위법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해양과 인근국가의 국민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것으로 2023년 8월 현재로 충분히 예견.
- ▶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정부 자신의 최종 결정 임. 국제책임 성립
- ▶ 국제책임이 성립 하려면, 국제법 주체가 국제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하여 상대국에 결정적 피해를 미쳤을 경우. 상기 첫째, 둘째 국제법 위반성 검토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인근 국가의 국민의 결정적 피해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필요. 입증은 권리를 주장 국가 행해야. 그런데 국제판례에서 “정황적 입증(Circumstantial Evidence)”도 입증으로 인정되었기에,

## VII-1.국제해양법 위반,국제재판소 제소 방안 검토

### 1. 구속력있는 절차의 선택 4가지:유엔해양법 제287조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제8부속서 특별 중재재판소

위 4가지중, 관할권 수락여부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제287조 5호)

### 2. 유엔해양법 협약 제7 부속서 중재판소에 일본정부 제소

▶ 제286조: 강제분쟁절차 활용(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아도 무관)-재판 성립.

▶ ICJ 관할권은 당사국 (일본정부)합의 필요(일본정부 비협조).

## VII-2. 제소방안

- ▶ 3. 일본 정부를. 본 안은 동 협약 제7부속서 중재 재판소 제소(강제분쟁절차), 동시에 최종 본안 판결시까지 위험시 방사능 오염수 방출중단을 제소 2주 후 부터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신청 가능.
- ▶ \*유엔국제해양법 제290조(잠정조치 /최종판결 까지)제1항:
  - ▶ "어느 재판소 정당하게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최종판결이 날때까지
  - ▶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위하여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 4.ITLOS, 잠정조치 신청해오면,필요성.시급성을 따져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

## VII-3. 제소방안

- ▶ 5. 한중일, 한일간 환경오염 관련 지역협정 체결
- ▶ 6. 오염수 방출과 피해발생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치밀한 자료 준비
- ▶ 방사능,환경오염 입증: (정황(circumstances) )입증으로 충분함환경보전을 위해서 과학적 확실성이 충분치 않더라도 환경훼손을 방지해야한다는 사전주의 의무 원칙 적용(국제환경법,국제중재판례). 그러나 미국은 엄격한 과학적 확실성 근거요하는 "사전방지의무원칙고수".
- ▶ 7. IAEA 검증 참여,관련 국제기구 참여,외교적 협의 방안

# 해양투기, 유엔해양법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제소사 사전 검토 사항

## ▶ 1. 강제 제소 절차 사전 고려 조건

- 피제소국 일본의 일방적 방사능 해양투기로 국제책임에 해당 되어도,
  - 국제분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UN헌장33조/국제해양법 제279~285조)/정치, 외교적 해결 거부 /지역협정, 양자협정, 조정에 의한 해결) **거부를 확인해야함.**
- ▶ -그런 후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분쟁절차 시작(유엔해양법 제286조-296조)

## ▶ 2. 절차의 선택; 아래 4가지 방안중(유엔해양법 제287조) 선택

- ▶ -유엔해양법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 유엔해양법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유엔해양법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소

## ▶ 3. 유엔해양법 제7재판소 중재재판소 선택

- ▶ 일본의 관할권 거부라는 정치.외교적 입장 고려. 가장 현실성 있음.

## ▶ 4. 제287조 3항: "유효한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

- ▶ 은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강제관할권 인정)

# IX. 국제중재 판례: 해양환경보호 규정 위반 사실을 주장한 유엔 해양법협약 중재사건 개관: 6건

- ▶ 1. MOX Plant Case( Ireland v.UK.,2001) : 일명 “아일랜드와 영국간 혼합산화물 핵연료 재처리공장 잠정조치 사건”. 해양법 위반조항:
  - ▶ 제192,193,194,197,206,207,211,212,213,217,222조.
  - ▶ \*아일랜드가 영국에게 상기 규정위반사실이 있다고 주장, 재판부는 최종은 EU협약특성으로 불인정.그러나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는 인정.
- ▶ 2. 말레시아와 싱가포르 간 조호르 해협 간척 잠정조치사건(2003);제192,194,198,200,204,205,206,210조.
  - ▶ \*말레시아가 싱가포르의 규정위반사실 주장.그러나 재판부는 불인정

## IX-2. 중재 판례

- ▶ 3. 모리셔스-영국 간 차고스 군도 사건(2015); 해양법 제194조.
  - ▶ \*재판부가 영국측의 규정 위반사실 인정.
- ▶ 4.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 유해조업/유해 건설, 해양법 192조, 194조, 197, 206조, 위반.
  - ▶ \* 재판부가 중국측의 규정위반 사실 인정.
- ▶ 5.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흑해 연안국 권리 선결적 항변 사건(2020): 케르치해협 대교 건설/세바스토폴 기름 유출사고. \*소송 진행중 임.
- ▶ 6. 모리셔스-몰디부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2023.4.28): 유엔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판결. 강제분쟁절차 활용.

# X. 종합 결론

- ▶ 1. 환경문제는 사후 구제보다 사전 주의 및 예방이 우선,  
▶ 무과실 국제책임 원칙.
- ▶ 2. 1982년 UN 신해양법의 특징중 하나는 해양환경보호,보전 강화,위반행위 철저한 처벌 법제도화,국제연대 강조.
- ▶ 3.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강제분쟁관할권 명문화.  
(제287조 3항)
- ▶ 4. 환경오염 문제 분쟁시, 입증책임도 과학적 검증없더라도 정황적 입증(circumstances evidence)이 인정되는국제판례 경향.
- ▶ 5.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이 [사전예방원칙] 보다 더 엄격하고 중요 해짐. 피해자에게 유리한 발전.

6. 2023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가능성만으로도 UN해양법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제소(강제분쟁해결절차)가 가능하고, 본안 판결 전 긴급한 위험성(8.24,오염수방류시작)에 근거, 제소후 2주안에 유엔해양법 제290조 오염수 방류 중단 잠정조치신청을 유엔해양법재판소 본안 재판소에 요구 가능함.

7.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자총회(23.10.2.-6)에서 공식 안건 채택. 한국정부, 핵오염수 중단요구. 런던의정서,일방적 문제제기로 중재절차 들어갈수 있음.한국정부가 중재요청을 해야 함.

8. 강제분쟁절차의 활용은 한일간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국측 협상력을 높여줌.

9. 국제재판소 제소 주체 자격은 모두 주권국가(정부) 이기에, 현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하는데 매우 소극적임. 한국정부의 국제재판소 제소강제를 압박하는 구체적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함.

10. 국내적으로는 민변이 8월16일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제소 조치 권한을 가진 한국정부(대통령과 국무총리 등)가 헌법상의 국민의 생명권,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근거로 헌법소원을 한 것도 하나의 압박 방안이 될 수 있다.

11. 국제적 압박으로는 일본 핵 오염수로 환경권.생명권 등 한국 헌법상 기본적인 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단체가 제네바 국제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국내적 구제원칙 완료(local remedies)충족 후에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방안. 핵오염수로 인한 환경권,생명권 침해는 한국정부가 1966년 가입한 자유권적 기본권과 동 선택의정서에서 명시한 "개인통보제도"상 보장된 것이기에 피해 개인 혹은 피해 단체는 UN 인권 이사회에 제소,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위해서 해당 소속정부를 제소 할 수 있다. 수용되면, UN인권 이사회는 한국정부에 피해자를 위한 특별입법조치와 관련 제반조치를 권고한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제소 촉구에 대한 큰 압력이 된다.

**12.** 한국정부는 방류후 대책 강구보다,사전 방류자체를 전면 철회 대책을 왜 세우지 않았는가? 일본에 2-3,4차(2024년 3월 말) 차후 해양오염수 방류말고,장기 보관요구 및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유지를 강하게 천명하라. 중국을 비롯한 타 태평양 인접국과 왜 연대 하지않는가?

**13.** 한국정부,핵오염수해양투기,국제법위반,국제책임성립,일본정부를 유엔해양법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즉시 제소하라. 잠정조치 신청은 방류(2023.4.24.)시작이후, 수용 가능성이 더 많으니 유엔해양법재판소 제소 2주후 바로 신청하라. 런던의정서 당사자총회,총회안건채택,중단요구하라. 신유엔해양법 정신(해양환경보호 및 그 위반시 엄격한 처벌 제도/연대성원칙)과 국제중재판례에 입각하여 국민의 건강 및 미래 인류의 환경권 생명권을 위해서 한국정부의 절극적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